

ISSUE BRIEFING

2019. 04.16

Vol. 192

2019

ISSUE BRIEFING

연구진

김재구_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김시백_산업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CONTENTS

0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주요내용	01
0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	05
03 전라북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응과제	10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I.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주요내용

1. 개편 배경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경위

-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경제성 분석 중심의 조사에서 2001년 정책성 분석항목을 도입하고, 2006년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정책성 분석에서 분리되면서 현재의 조사틀 확립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타당성조사(주무부처) → 설계 → 보상 → 시공」의 순차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제도화
-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및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R&D·정보화사업, 중기지출 500억원 이상인 복지 등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요구 증대

-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99~'18) 총 849개 사업(386.3조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

되었으며, 이 중 약 300개 사업(35.3%, 154.1조원)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예타조사는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 제동,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SOC 예산 축소('09년 24.7조원 → '19년 19.8조원) 기조 속에서 사업우선순위 설정의 역할도 수행

• 인구감소, 산업위기 등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대규모 국가예산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편 요구가 증가되고 있었음

-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예타 통과 결정적 요소로 작용(비수도권은 수요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 호소)

- 복지사업 등에도 SOC 등 건설사업과 같은 '適否(시행·미시행)'의 평가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

- 연구기관인 KDI가 경제성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포함한 종합평가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문제라는 인식

- 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예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기관 확대 필요성 제기

- 예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의견

* 조사기간(개월): ('09) 7.8 → ('12) 9.4 → ('15) 14.8 → ('17) 21.3

• 정부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요구가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음

-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과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평가체계 마련

- 예타평가 거버넌스 개편 및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주요내용(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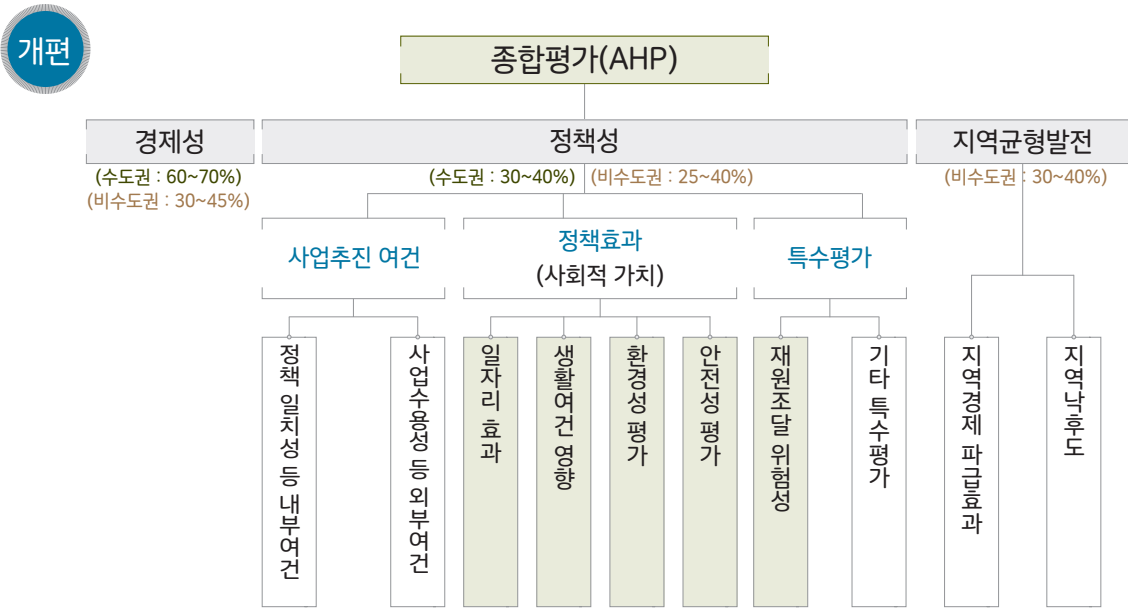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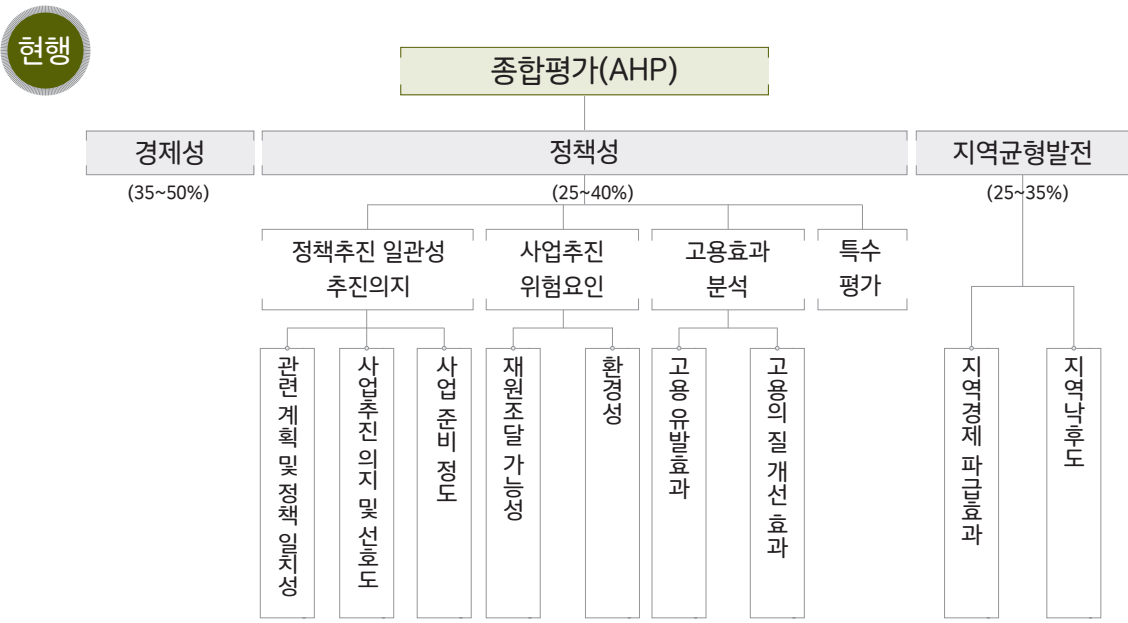
◎ 개편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함
 - 종합평가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를 이원화하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복지 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추진
 -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성 분석과 종합평가를 구분하여 수행토록 하였으며, 전문성 강화와 경쟁체제 도입 차원에서 예타 조사기관을 다원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토록 추진

추진 방향	중점 추진과제
<p>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적극 반영</p>	<p>① 종합평가 비중 개편 • 수도권·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낙후지역 배려</p> <p>② 정책성 평가 내실화 :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정책성 분석에서 “주민 삶의 質” 향상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 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p> <p>③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 ‘시행·미시행’의 이분법적 평가를 지양하고, 수혜대상·전달체계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 기능 강화</p>
<p>②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p>	<p>④ 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 KDI 등이 경제성·종합평가(AHP) 일괄수행 → 경제성은 KDI 등이 종합평가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수행</p> <p>⑤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 • 예타 조사기관 추가 지정 →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 도입</p> <p>⑥ 예타 조사기간 단축 • 1년 이내 조사 완료 추진 (철도 1년 6개월)</p>

◎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 개편(안)

- 非R&D사업의 예타 평가체계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가중치를 이원화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함
- 정책성 평가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책효과' 항목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에 반영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II.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

1. 종합평가 관련

◎ 비수도권 대상 균형발전 평가 강화

- (기존) 예타 종합평가(AHP)시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 범위 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함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 (AHP≥0.5인 경우 타당성 확보)

- 지역격차가 갈수록 증가되면서,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 인식 확산
- (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달리 적용하면서 각각의 평가 가중치를 조정함
 - 비수도권 : 균형발전평가 강화(+5%p), 경제성 축소(△5%p)
 - 수도권 :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 다만, 수도권 중 ①접경·도서 지역, ②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 SOC사업 평가체계(AHP 가중치) 개편 전과 후 〉

구분	현행	개편안	
		비수도권	수도권
① 경제성	35 ~ 50%	30 ~ 45%	60 ~ 70%
② 정책성	25 ~ 40%	25 ~ 40%	30 ~ 40%
③ 지역균형	25 ~ 35%	30 ~ 40%	-

- (전북영향) SOC사업 종합평가(AHP)에 있어 사업타당성 확보(AHP≥0.5)에 긍정적이거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종합평가 가중치에 있어 균형발전평가보다 경제성 평가가 다소 높은 비중 차지
-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사업 중 통과되지 못한 사업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단 2건의 사업만이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락한 사업(비수도권)의 평균 AHP 점수는 0.406 → 개편된 평가 가중치 적용시 0.427로 소폭 상향

- 즉, 종합평가 가중치 개편이 전북 사업의 예타 통과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

〈 SOC사업 평가체계(AHP 가중치) 개편 전과 후 〉

지역	예타통과			예타탈락	합계
	소계	경제성 통과	경제성 미통과		
수도권	23	20	3	10	132
비수도권	40	22	18	92	33
기타	3	3	—	2	5
합계	66	45	21	104	170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들을 취합, 분석

주 : 2개 지역 이상 걸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별 사업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건수는 170건보다 작음

◎ 종합평가(AHP) 체계 개편

- (기존) 조사기관(KDI 등)이 B/C분석(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 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AHP)까지 수행, 사실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함
 - 종합평가지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이해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부처·지자체의 충분한 설명기회 부족
- (개편)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변경함
 - 분과위원회 :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이전 분과위로 구성, 사업별 종합평가 시행
 - * 분과위원회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민간위원 2인, 조사기관 PM 1인, 외부전문가(위촉위원) 7인으로 구성
 - 사업추진 부처·지자체가 직접 AHP 평가자(분과위원)에게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북영향) 기존과 비교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회 제공으로 부처·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종합평가 가중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을 전제로 예타 통과율 향상이 예상됨
 - 기존에는 사업의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 공정성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대한 의심 팽배 및 소모적인 비공식 대응에 따른 어려움 호소

-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 추진부처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되며, 사업설명시 주요 평가항목별 대응 시나리오의 사전 준비 필요

2. 평가방식 관련

◎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 (기존) 환경위험, 직접 고용효과만을 평가해 왔으며,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생활 여건, 환경, 안전 등) 개선여부 등 다양한 정책효과 분석에 한계가 있음
 - 과거와 달리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개편) 정책성 평가에 '정책효과'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삶의 질(質)에 기여하는 ①일자리, ②주민생활여건 영향, ③환경성, ④안전성 평가를 반영함
 - ① 일자리 : 직접 고용효과(현행) + 간접 고용효과 등
 - ② 주민생활여건 영향 : 공공서비스 접근성, 건강·생활불편 개선 등
 - ③ 환경성 : 부정적 환경영향(현행) + 수질·대기질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
 - ④ 안전성 : 재난·재해 대응 가능성, 안전사고 가능성, 정보보안 등
-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한 후 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

〈 정책성 분석 평가 항목 개편 전과 후 〉

현행		개편안	
분류	세부 평가항목	분류	세부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 사업의 준비 정도	사업 추진여건	· 관련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외부여건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 자원조달 가능성 ·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문제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 생활여건 영향 · 환경성 평가 · 안전성 평가
고용효과	· 직접 고용유발효과 · 고용의 질 개선효과	특수평가항목	· 자원조달 위험성 · 문화재 가치 · 기타 추가 평가항목
특수평가항목	· 추가 평가항목		

- (전북영향)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여부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간접 고용효과의 반영 정도가 '정책효과'항목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에 긍정적 효과** 도출이 예상됨
 - 정책적 평가에서는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일부 적용되고 있으나, 일자리의 경우 직접 고용효과와 함께 간접효과가 포함되어 기존보다 일자리 효과는 증대 예상

◎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 개편

- (기존) 중기지출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복지·소득이전 사업을 예타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SOC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함
 -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예타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사업은 사업추진 시기·방법·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가 중요
- (개편)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하고,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제시 중점을 두도록 변경

〈 복지사업 평가항목 개편 전과 후 〉

현행		개편안	
분류	세부 평가항목	분류	세부 평가항목
정책성분석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 여타사업과의 중복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 사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 전달체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경제·사회 환경 분석	· 경제·사회 여건분석 · 경제·사회 영향분석 · 재정지속가능성 분석
경제성분석	· 비용-효과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사업목표의 적절성 · 수혜대상의 적절성 · 추진방법의 적절성 · 전달체계의 적절성
		특수평가항목	· 기대효과의 적절성 · 비용추정의 적절성 · 비용대비 효과의 적절성

- (전북영향) 복지·소득이전 사업은 대부분 국가 단위 사업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3. 기타

◎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다원화

- (기존) SOC, 건축 등 非R&D사업은 KDI(한국개발연구원), R&D사업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 중임
 - 최근 SOC 이외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분석틀 적용, 관련 분야 전문성 확보 등에 대한 요구 증가
- (개편) 非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함
 - * KDI, KIPF(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할 조직·전문인력을 갖추고 관련 분야 실적이 있는 기관을 지정 가능(국가재정법 제8조의 2)
- (전북영향) 조사기관 다원화와 전북의 예타 통과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기관에 따라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북 차원의 대응 및 관리 매뉴얼 마련 필요

◎ 예타조사 기간 단축

- (기존) 예타 조사기간은 장기화되는 추세로 '18년 평균 19개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처·지자체 등은 예타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 제기
 - 조사기관은 주무부처의 사전 준비 부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 등으로 적기 조사의 어려움 호소
- (개편) 예타사업 신청 전에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제출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제출 시기 단축
 - 예타 조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 (철도는 1년 6개월)
- (전북영향) 예타사업 신청 전에 사업 주무부처와의 사전 준비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예타

조사 이전 단계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사업기본계획 작성에 있어 높은 수준의 내용과 준비를 요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며, 함께 적극적인 대응 요구

III. 전라북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응과제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을 종합하면 예타 통과율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개편을 통해 예타 전 단계인 예타 대상사업 선정시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사업 주무부처와의 사전준비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기본계획 작성에 있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내용과 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와 함께 선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변경 또는 추가된 지표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예를 들어, 전북의 산업 및 고용현황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직·간접 고용효과 분석에 있어 일자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전북형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관리 매뉴얼 개선 및 보완

- 개편된 예타 제도에 맞추어 사전준비부터 신청, 조사, 후속조치 등 예타 단계별 대응 및 관리 매뉴얼을 개선하고 보완되어야 함
 -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예타조사 대응 및 관리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그리고 발표된 예타 개편안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및 관리 매뉴얼 작성 필요
 - 조사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각각의 조사기관 마다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사업별 담당자들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전담조직 설치

- 예타제도 이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등 사업기획, 사업 주무부처 협의, 조사 대응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업추진 부서의 능력향상과 예타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자체의 경우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에 대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체 타당성 검토 뿐만 아니라 예타 대응 전반에 대한 컨설팅 실시
 - * 예타 대응 컨설팅 및 자체 타당성 보고서 검토 기능 확보 지자체 : 충남, 충북

◎ 추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지속 요구

- **(예타대상사업 기준)** SOC 분야 예타 대상사업 기준 상향(500억원 → 1,000억원) 조정되어야 함
 - 예타 도입('99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규모를 당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제규모 및 재정규모에 맞게 SOC의 경우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필요
 - * 국토교통부(2016)에 따르면 예타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조정시, 2005~2014년 동안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1,267건 중 총 188건(전체의 14.8%, SOC의 27.6%)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
 -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인력과 예산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조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분석방법 개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의 분석방법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
 -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사업 중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성 및 지역균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통과한 사업은 18건으로 이들 사업들의 평균 B/C 값이 0.93으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매우 중요한 지표
 -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경제성 평가 기준을 B/C 값이 1인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 필요
 - *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공공 편익은 인구가 많거나 산업 규모가 큰 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나 낙후지역 사업일수록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국가균형발전 영향 지표 적용)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있어 적용 지표에 지니계수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영향 평가 기준으로 활용 필요

* 현행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지표는 지역낙후도 지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지표로는 단편적으로 지역활성화 여부의 평가만 가능

•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강화) 국민의 기본생활권과 관련된 사업과 낙후지역 또는 위기지역 대상 사업에 대한 예타대상사업 선정 의무화 및 예타면제 추진이 필요함

- 기존 예타면제 대상사업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적기 시행을 위한 범위 및 요건 완화 필요

- 사회복지, 보건, 교육,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반드시 사업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예타면제 확대 및 명시화

* 기본생활권(National Minimum):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간에 동일한 수준의 삶의 질 보장

- 낙후지역 또는 위기지역에 대한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의무화(예타 기회제공 등) 및 예타면제 추진 필요

* 낙후지역 : 각 지역의 상대적 발전도(또는 낙후도) 등의 순위를 바탕으로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낙후도지수의 하위 그룹 지역을 의미

* 위기지역 : 고용위기지역(고용정책기본법)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

-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확대로 국민들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체감도 개선 가능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

<참고문헌>

국토교통부(201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연구

기획재정부(201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보도자료(2019.4.3.)

기획재정부(2018),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개정)

기획재정부(201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한국개발연구원(2015), 문화관광 부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13),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19. 04.16 Vol. 192